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상헌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205

제안연월일: 2020. 7. 20.

제 안 자:이상헌・안호영・송갑석

소병철 · 서일준 · 김태호

윤영덕 • 이개호 • 김승남

조오섭 · 양향자 · 민형배

주철현 • 이용빈 • 윤재갑

신정훈 · 추경호 · 서동용

서삼석 · 윤준병 · 장경태

정청래 의원(22인)

제안이유

2020년 1월 16일부터 "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체육 단체의 장의 겸직금지"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운영과는 다르게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, 시·도의회의원 및 시·군·구의회 의원이 아닌 자가 지방체육회장으로 선출되므로 지역 사회의 체육 진 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체육회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고 재정지원 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음.

이에 따라 지방체육회를 대한체육회와 같이 법정 법인으로 특수법 인화하여 지역체육을 특성화하는 역할을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 록 권한 및 책임을 분명히 규율하고 지방체육회의 법인에 관한 주무 관청을 이 법 체계에 부합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정하되, 장 관으로부터 권한위임을 받아 감독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지방자 치단체장과 지방체육회장 간의 원활한 협의를 유도하기 위하여 종전 의 임의기구로 운영하던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 려는 것임.

또한, 지방체육회장 선거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고 지방체육회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장의 감독 권한을 명시하여 예산 집행과 사업관리·감독 등 법인으로서 운영·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.

아울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 수익금 중 일부를 따로 대한체육 회로 배정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체육회 및 경기단체에 운영비를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거나 실업팀 운동경기부의 육성이나 체육인 일자 리 양성 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려는 것임.

<u> 주요내용</u>

- 가. 대한체육회의 명칭을 "통합체육회"에서 "대한체육회"로 변경함(안 제2조 등).
- 나.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임의 기구에서 필수적으로 설치하도록 바꿈 (안 제5조제1항).
- 다. 지방체육회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필요 경비 및 연구비 보조 대상으로 추가하고,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보조대상으로 추가하며

- 임의 지원에서 필수지원으로 바꿈. 보조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위임함(안 제18조).
- 라. 국민체육계정 재원의 일부에 해당되는 금액을 대한체육회의 사업과 활동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함(안 제22조).
- 마. 지방체육회의 법인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함(안 제33조의2).
 - 1) 지방체육회에 법인격을 부여함.
 - 2) 지역사회의 체육 진흥에 관한 사업과 활동을 법인의 사업과 활동으로 함.
 - 3) 명칭 부여 방식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다음에 "체육회"를 붙이도록 규정함.
 - 4) 정관 사항으로 회원과 회비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.
 - 5) 임원 중 회장은 정관에서 투표로 선출하도록 하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함.
 - 6) 그 밖의 사항은 「민법」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.
- 바. 유사 명칭 사용 금지대상으로 각 지방체육회의 명칭을 추가함(안 제42조).
- 사. 지방체육회를 문화체육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고 또는 검사 대상으로 추가함(안 제44조제1항).
- 아. 시·도체육회 및 시·군·구체육회의 지방체육회로의 설립 또는 전환을 위한 별도의 절차를 규정함(안 부칙 제4조).

법률 제 호
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4호의2 중 "통합체육회"를 "대한체육회"로 하고, 같은 조 제9호가목 중 "통합체육회·"를 "대한체육회,"로, "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"을 "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, 시·도체육회 및 시·군·구체육회(이하 "지방체육회"라 한다)"로 하며, 같은 조 제11호중 "통합체육회"를 "대한체육회"로 하한다.

제5조제1항 중 "둘 수 있다"를 "둔다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협의회"를 "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, 지방체육회의 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그 밖에 협의회"로 한다.

제18조제2항 중 "통합체육회"를 "대한체육회"로, "그 밖의"를 "지방체육회, 그 밖의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통합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지부·지회"를 "대한체육회,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지부·지회 및 지방체육회"로 하며, "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"를 "운영비를 보조한다"로 한다.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운영비 보조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 제22조제1항제10호 중 "통합체육회"를 "대한체육회"로, "생활체육"을 "지방체육회, 생활체육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 단 중 "재원 중"을 "재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체육회의 사업과 활동의 지원에 우선 사용하고, 그 밖의 재원 중"으로 한다.

제33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통합체육회"를 각각 "대한체육회"로 한다.

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33조의2(지방체육회) ① 지역사회의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지방체 육회를 설립한다.
 - 1. 지방체육회에 가맹된 체육단체와 생활체육종목단체 등의 사업과 활동에 관한 지도와 지원
 - 2. 해당 지역 체육대회의 개최와 국내외 교류
 - 3. 체육회가 개최하는 체육대회의 참가
 - 4.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지역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
 - 5. 지역 체육인의 복지 향상
 - 6. 지역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
 - 7. 지역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 지원
 - 8.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조사 및 연구
 - 9. 지역의 학교체육, 전문체육, 생활체육의 진흥 및 연계사업
 - 10. 지역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
 - 11. 지역 체육역사 발굴, 확산 등 체육문화사업

- 12. 그 밖에 지역사회의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- ② 지방체육회는 법인으로 한다.
- ③ 지방체육회의 명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다음에 "체육회" 를 붙여서 사용한다.
- ④ 지방체육회의 회원과 회비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
- ⑤ 지방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한다.
- ⑥ 지방체육회는 제4항에 따른 회장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「선거관리위원회법」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.
- ⑦ 지방체육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「민법」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제42조 중 "도핑방지위원회나 진흥공단이 아닌 자는 통합체육회, 대한 장애인체육회, 한국도핑방지위원회"를 "지방체육회, 도핑방지위원회나 진흥공단이 아닌 자는 대한체육회, 대한장애인체육회, 제33조의2제3항 에 따른 지방체육회의 명칭, 한국도핑방지위원회"로 한다.

제44조제1항 중 "수탁사업자"를 "지방체육회, 수탁사업자"로 한다.

부 칙

-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4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법 시행 당시 통합체육회는 체육회로 본다.
 - ② 이 법 시행 당시 통합체육회의 등기부, 그 밖의 공부상의 명의는 체육회의 명의로 본다.
- 제3조(종전의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통합체육회가 행한 행위는 체육회가 행한 행위로 본다.
- 제4조(시·도체육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) ① 이 법 시행 당시 체육회의 정관에 따른 시·도체육회 및 시·군·구체육회[「민법」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각각 설립된 사단법인 대구광역시 달서구체육회, 사단법인 대구광역시 동구체육회, 사단법인 대구광역시 북구체육회, 사단법인 광주광역시 동구체육회 및 사단법인 당대구체육회(이하 이 조에서 "사단법인 체육회"라 한다)를 포함한다]는 각 총회의 결의로써 해당 지방체육회의 모든 재산과 권리·의무를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해당 지방체육회의가 승계할 수 있도록 이 법 공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지방체육회의정관을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 - ② 지방체육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방체육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.
 - ③ 사단법인 체육회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

- 는 「민법」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.
- ④ 제3항에 따라 해산의제된 사단법인 체육회의 모든 권리·의무 및 재산은 각각 해당 지방체육회가 승계한다.
- ⑤ 이 법 시행 당시 체육회의 지회이거나 지회의 지회의 임·직원은 지방체육회의 임·직원으로 보며,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 다.
- 제5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의2제1호 중 "통합체육회"를 "대한체육회"로 한다.

②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1호가목 중 "통합체육회"를 "대한체육회"로 한다.

③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7조의4제2항제2호 중 "통합체육회"를 "대한체육회"로 한다.

제6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민체육진흥법」중 통합체육회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	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4의2. "국가대표선수"란 통합체	4의2 <u>대한체</u>
<u>육회</u> , 대한장애인체육회 또	<u>육회</u>
는 경기단체가 국제경기대	
회(친선경기대회는 제외한	
다)에 우리나라의 대표로	
파견하기 위하여 선발·확	
정한 사람을 말한다.	<u>.</u>
5. ~ 8. (생 략)	5. ~ 8. (현행과 같음)
9. "체육단체"란 체육에 관한	9
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	
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	
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	
말한다.	<u>.</u>
가. 제5장에 따른 <u>통합체육회</u>	가 <u>대한체육</u>
<u>·</u>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그	<u> </u>
지부 · 지회(지부 · 지회의	
지회를 포함한다), 한국도	
핑방지위원회, <u>서울올림픽</u>	<u>서울올림픽</u>
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	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, 시
	·도체육회 및 시·군·구

나. ~ 아. (생 략)

10. (생략)

11. "경기단체"란 특정 경기 종 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 적으로 설립되고 <u>통합체육회</u> 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 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문화 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를 말한다.

12. (생략)

제5조(지역체육진흥협의회) ① 지 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 을 수립하고 그 밖에 체육 진 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 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 역체육진흥협의회(이하 "협의 회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 <u>협의회</u>의 조직과 운영에 필 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 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체육회(이하 "지방체육회"
라 한다)
나. ~ 아. (현행과 같음)
10. (현행과 같음)
11
대한체육회-
<u> </u>
10 (=1 =1 =1 0)
12. (현행과 같음)
제5조(지역체육진흥협의회) ① -
<u>둔다</u> .
② 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
장, 지방체육회의 회장을 포함
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
으로 구성하며, 그 밖에 협의회
•

제18조(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 에 대한 보조) ① (생 략)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<u>통</u>합체육회, 대한장애인체육회, 한국도핑방지위원회, 서울올림 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, 스포 츠윤리센터, <u>그 밖의</u> 체육단체 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한다.

③ 지방자치단체는 <u>통합체육회</u>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지부· 지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<u>운영</u> 비를 보조할 수 있다. <후단 신설>

제22조(기금의 사용 등) ① 국민 체육진흥계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지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고,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「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」제14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한다.

1. ~ 9. (생략)

10. <u>통합체육회</u>, 대한장애인체

육회, 한국도핑방지위원회, 생활체육 관련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 기관, 스포 츠윤리센터 및 체육인재육성 관련 단체의 운영·지원

11. • 12. (생략)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9조 제2항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계 정에 출연되어 조성된 <u>재원 중</u>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분비율에 해당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목적에 사용할수 있다. 이 경우 그 시기 및 방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- 1. ~ 3. (생략)
- ③ ④ (생 략)

제33조(<u>통합체육회</u>) ①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<u>통합체육회</u>(이하 "체육회"라 한다)를 설립한다.

1. ~ 6. (생략)

<u> </u>
<u>방체육회, 생활체육</u>
11.•12. (현행과 같음)
②
⊎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
라 대한체육회의 사업과 활동
의 지원에 우선 사용하고, 그
<u>밖의 재원 중</u>
1. ~ 3. (현행과 같음)
③・④ (현행과 같음)
제33조(<u>대한체육회</u>) ①
대한체육회
1. ~ 6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⑧ (생 략) <신 설>

- ② ~ ⑧ (현행과 같음)
 제33조의2(지방체육회) ① 지역사
 회의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
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기
 위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인가
 를 받아 지방체육회를 설립한
 다.
 - 1. 지방체육회에 가맹된 체육단

 체와 생활체육종목단체 등의

 사업과 활동에 관한 지도와

 지원
 - 3. 해당 지역 체육대회의 개최
 와 국내외 교류
 - 3. 체육회가 개최하는 체육대회 의 참가
 - 4.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

 지역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

 사업
 - 5. 지역 체육인의 복지 향상
 - 6. 지역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
 - 7. 지역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 호인조직의 활동 지원
 - 8.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조사 및 연구
 - 9. 지역의 학교체육, 전문체육,

- <u>생활체육의 진흥 및 연계사업</u>
 10. 지역 체육시설의 관리 및
 <u>운영</u>
- 11. 지역 체육역사 발굴, 확산 등 체육문화사업
- 12. 그 밖에 지역 체육 진흥을

 위하여 필요한 사업
- ② 지방체육회는 법인으로 한다.
- ③ 지방체육회의 명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다음에 "체육회"를 붙여서 사용한다.
- ④ 지방체육회의 회원과 회비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
- ⑤ 지방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 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한다.
- ⑥ 지방체육회는 제4항에 따른 회장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「선거관리위원회법」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 여야 한다.
- ① 지방체육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「민

제42조(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)
체육회, 장애인체육회, <u>도핑방</u>
지위원회나 진흥공단이 아닌
자는 통합체육회, 대한장애인체
육회, 한국도핑방지위원회나 서
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
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
하지 못한다.

제44조(보고·검사 등) ① 문화체 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 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 하여 필요하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체육회, 장애인체육회, 진 흥공단, 수탁사업자, 그 밖에 체육단체나 직장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·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· 서류,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법」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
을 준용한다.
제42조(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)
<u>지방체육</u>
회, 도핑방지위원회나 진흥공단
이 아닌 자는 대한체육회, 대한
장애인체육회, 제33조의2제3항
에 따른 지방체육회의 명칭,
한국도핑방지위원회
제44조(보고・검사 등) ①
진방체육회, 수탁사업자
② (현행과 같음)